

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66호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 
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 
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28일

고용노동부장관

## I.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

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 
4,330,442원으로 한다.

## II. 행정사항

### 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2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 
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